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77
----------	------

제출연월일 : 2019. 5.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2019. 7. 1.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등급을 명시한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 가.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폐지 반영 (안 제1조)
- 나.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폐지 반영 (안 제1조)
- 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폐지 반영 (안 제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4. 16. ~ 2019. 5. 8. (22일)

- 나. 의견내용 :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해당 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 ~ 3급” 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4급 ~ 6급” 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로 한다.

제2조(「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1급 내지 3급” 을 “장애정도가 심한” 으로 한다.

제3조(「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장애등급이 1-2급인자” 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 운 한
	팀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김 선 두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노 재 훈 (790-5718)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p> <p>1. <u>장애등급 1급 ~ 3급</u> : 100만원 이내</p> <p>2. <u>장애등급 4급 ~ 6급</u> : 70만원 이내</p> <p>②·③ (생략)</p>	<p>제4조(지원액) ① ----- -----, ----- ----- ----- -----.</p> <p>1. <u>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u> -----</p> <p>2. <u>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2조(「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대관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p> <p>1.·2. (생략)</p> <p>3. <u>1급 내지 3급</u> 장애인이 사용할 때</p> <p>4. ~ 7.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 (대관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정도가 심한</u> -----</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3조(「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서 <u>장애등급이 1~2급인자</u></p>	<p>제3조(지원대상) ----- -----.</p> <p>1.----- ----- <u>장애 정도가</u> <u>심한 장애인</u></p>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